##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

신청함

○ 우편고지

희망함

) ଜା

○ 신청하지 않음

전자고지

0 애니오

○ 희망하지 않음

더보기 ∨

더보기 ∨

더보기 ∨

다음

(실업크레딧신청일자: 2020/12/15)

09

0 %

09

아니요

아니요

아니요

## <u>ei.go.kr</u>

✔ - 먼저 온라인취업특강(STEP) 클릭 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단계에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부분에 [STEP 동영상교육바로가기] 로 보셔도 됩니다.
 - 번호 순서대로 빨간 도움말을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 선택해야합니다.



1. 구직활동내역 [상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문을 읽고 동의를 하셔야합니다.]	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보기 ~
다ァ        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          워크넷을 이용하시면 구직활동/실업인정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.         워크넷 바로가기	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★ 구직활동 구직활동
전체기간 중 구적활동이 있는 경 <mark>우가 있으신가요?</mark> 이 있음 이 없음	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
2.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	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★ (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) 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○ 전자우편
고로나 19 관련 실업급여 보완지침에 따라,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학습 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을 해야합니다.	재취업희망 유형
교육자료 <mark>자체학습을 한 경우에는</mark> 아래의 과정에서 1 <mark>차 실업인정일 교육</mark> 을 선택한 뒤 세부내역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학습을 작성하고, 첨부구비서류로 <mark>수강확인서</mark>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	재취업희망유형          실용근로자           일용근로자           예술인        노무제공자          지영업자           기타프리랜서등
교육동영상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에서 온라인취업특강을 선택한 뒤 검색츠라 클릭착업 훈련(STEP) '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'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(별도 첨부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)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] [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] [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] [2]	<ul> <li>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려고 하는 일자리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 전에 근무했던 일자리 유형이 적용됩니다.</li> <li>노무제공자는 '보험설계사, 신용카드·대출모집인, 학습지교사, 방문교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종사자, 방과후강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가 해당합니다.</li> </ul>
전체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? ex) 계좌제, 직업훈련, 부당해고 구제자,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과정 세부내역(훈련기관,과정명,기간 등)	(i) 임시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윈도우10의 경우, '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' 에 체크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. (이미 체크하였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, 새 창에서 진행하세요.) 임시저장이나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(1577-7114, 2번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      2021/10/15       / 1차실업인정 교육(STEP)       검색        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, 검색버튼       + -	작성시 유의 사항
작성시 유의 사항         • 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       • 거入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       •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(반환 및 추가정수)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       •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(반환 및 추가정수)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       •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허위신고(위장고용. 해고 등)         • 이직사유 허위 기재         • 취업사실 은닉,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       •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	<ul> <li>기재하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및 지원급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</li> <li>법률에 따라 행정처분(반환 및 추가징수)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b>주요 부정행위 유형</b> <ul> <li>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허위신고(위장고용, 해고 등)</li> <li>이직사유 허위 기재</li> <li>취업사실 은닉, 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</li> <li>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</li> <li>"임시저장" 먼저 하고 "다음" 클릭 하세요</li> <li>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할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수정 삭제 제출	이전 초기화 <b>임시저장 다음</b>

##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

## ei.go.kr

번호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

work.go.kr 에서 구직신청 꼭 하십시오.



상실과 이직확인서 미처리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. 센터 방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.